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867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2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윤승준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07.10.25.근저당권			배당요구종기	2025. 7. 15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구도윤	1층 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전세권 자	2021. 12. 21. ~2023. 12. 20.	80,000,000					
		권리신고	주거 전세권 자		80,000,000					2025.5.16.
구태복	2층 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전세권 자	2022.2.17.~2 024.2.16.	50,000,000					
		권리신고	조사된 내용없 음 전세권 자		50,000,000					2025.5.20.
<p><비고> 구태복: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인임(집행권원: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3753 전세금반환 판결).</p>										
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				
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										
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<p>비고란</p>										
<p>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867

[물건 1]

1.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6-8
대 102m²
2.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6-8
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64길 14-7
위 지상
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
택
1층 62.82m²
2층 55.47m²
세멘부록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
1m²

- 제시외 2-1 다용도실 샷시조 11.1m²
2-2 다용도실 샷시조 11.9m²
2-3 창고 판넬조 2m²

감정평가액		224,929,68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05	224,929,680	22,493,000
2회	2026.04.09	157,450,000	15,745,000
3회	2026.05.07	110,215,000	11,021,500
4회	2026.06.04	77,150,000	7,715,000
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			